

● **환경부고시 제2023-12호**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2023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01월 13일

환경부장관

2023년도 특정관리제품(태양광패널) 재활용의무량

2023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의 총량

제품명	2023년도 재활용의무량의 총량
태양광패널	159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